

『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 반영으로 귀책사유 별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 및 도서관장의 사용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
- 도서관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위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귀책사유별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(안 제6조)
 -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10 퍼센트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
 - 사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취소 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-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
 - 도서관장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규정 삭제(안 제7조)
 - 도서관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위탁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(안 제20조제2항)
 -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맞춤법 등 수정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2조의2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,
-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6조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약일 5일, 3일, 1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각각 100퍼센트, 80퍼센트, 50퍼센트를 반환하던 것을,
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

- 도서관의 운영상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용일수를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으며
-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전액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.
- 또한, 안 제20조에서 도서관 위탁기간 및 연장 기간을 각각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이 되는 사용료 반환 조항을 자체 정비하고
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기간 및 연장
 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
 사료됨.